

# 대신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6. 9. 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대신대학교 학칙 제61조의 2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신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습보조기기 지원
3. 정보접근 지원
4. 편의시설 지원
5. 교직원, 보조인력 지원
6.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센터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 ④ 센터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사회복지사)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 ⑤ 센터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는 학생과에서 수행한다.

## 제3장 운영위원회

**제4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규정 제정 및 개정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센터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재정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 지원 예산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9조(운영세칙)**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